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 유족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에서 병원을 대리하여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15가합17444 판결)에서 법원은 유족들이 주장하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망인은 2015. 5. 배우자의 치료를 위해 대전 서구에 있는 A병원 응급실에 동행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하였다. 당시 망인은 A병원 응급실로 전원된 메르스 16번 환자와 약 5분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A씨의 유족들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는데 국가와 지자체,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정부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유족들은 A병원에 대해 망인이 16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망인에게 이를 설명하여 조기검사를 받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 망인이 메르스로 확진된 후에도 해열제 처방 등 치료를 지연한 과실, 피고 병원은 국가지정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므로 망인을 위 국가지정 감염병 관리기관인 병원으로 전원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원조치를 지연한 과실, 감염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메르스 대응지침에서 정한 메르스 환자 발생 시 격리 조치 및 감염자와의 접촉차단의무를 위반한 과실, 병원의 지도·설명 의무위반 등 주장하였고, 국가에 대해선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과실, 16번 환자 확진된 직후 접촉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은 과실, 국가지정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즉시 전원조치 하지 않은 과실,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 대책을 소홀히 한 과실 등을 주장, 대전서구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관리병원으로 조속한 입원 및 격리 의무 위반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가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이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유족



LK PARTNERS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들이 주장하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A씨가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국가 공무원의 과실 등으로 A씨가 사망했다거나 격리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유족들의 청구도 이유가 없으며, 대전 서구도 병원에서 A씨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 같은 날 관할 보건소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등 메르스 감염 차단과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익 변호사/의사

TEL. 02 565 9801

E-mail. jibae@lkpartner.co.kr